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
(안철수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484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4. 21.

발 의 자 : 안철수 · 김승수 · 김대식  
배준영 · 안상훈 · 김선교  
조지연 · 김형동 · 엄태영  
이종배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의 일부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.

그러나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복지시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시설의 확충과 운영에는 상당한 초기 투자비용이 수반되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임.

이에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여 노인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돌봄 기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20조제1항).



법률 제 호

##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2026년 12월 31일”을 “2028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0조(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) ① 「노인복지법」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<u>2026년 12월 31일까지</u> 감면한다.</p> <p>1. 2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20조(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2028년 12월 31일</u>----- --.</p> <p>1.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